입법동향 – 2024년 제12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 1
2.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 ····· 5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 ····· 9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12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미국의 청소년 소셜비디어 중독 예방」 입법례 ····· 19
2.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 28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53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지방의회 요구 서류 제출 기간을 3일보다 짧게하여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57
2. 공영주차장 근무 소속 직원 주차요금 감면 내용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60

Ⅵ. 법령 해석 사례

1.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 ····· 65
2. 사업장 건물 외벽 옆의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 ····· 69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4. 11. 11., 경상북도조례 제5153호, 2024. 11. 11., 제정】

□ 소관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농촌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농촌의 **소멸위기가 증가**하면서 **농촌자원을 공유하여 농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할 정책 필요성의 증대** 및 **도시와 농촌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

□ 주요내용

가.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에 대해 규정함(제6조).

나. 공유농업네트워크에 대해 규정함(제7조).

다.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대해 규정함(제8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3곳(경북, 충남, 경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공유농업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업시설, 농촌자원 등을 소비자와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농업판 공유경제**라 할 수 있음.

※ 공유경제의 대표적 모델: 에어비앤비, 우버, 카카오 택시 등

○ **과거 생산주의 농업**에서 현대 농업은 교육과 관광, 힐링 등이 융합된 **다기능적 농업**으로 소비자의 후원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 농도(農道)인 우리 도 역시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 해소** 및 **농업인 소득창출**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4. 11. 11., 경상북도조례 제5153호, 2024. 11. 1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경상북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협력을 제고한다.
2.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농촌 환경의 생물다양성 보전,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3.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농업”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공간(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플랫폼”이란**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대상 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3. “공유농업활동가”란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유농업네트워크”란**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회사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5.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설립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
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
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
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 단위의 공유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농업 모델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경상북도 공유농업의 가치 제고와 저변확대 등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

【시행 2024. 11. 1., 충청북도조례 제5194호, 2024. 11. 1., 제정】

□ 소관위원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제정이유

◇ 충청북도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충북학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제4조).

나. 충북학 진흥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5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4곳(충북, 충남, 대전, 세종)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지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24. 5. 17.) **5분자유발언**으로 지역경제와 개발의 논리에 파묻혀 **전북의 문화와 역사의 거룩한 자취**를 **유지하지 못한 채 문화와 역사의 향기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음.

○ 우리 도는 '전북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전북연구원 부속연구센터**로 **전북학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구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총 4명**, **예산은 4억 원**(2025년도)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 **인력 4명은 '전북학' 업무뿐만 아니라 전북연구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전북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

【시행 2024. 11. 1., 충청북도조례 제5194호, 2024. 11.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북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학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충북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북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북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북학 관련 정책
2.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충북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충북학진흥사업) 도지사는 **충북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북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2. 충북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
3. 충북학 관련 포럼, 심포지엄 등의 사업
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충북학연구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학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북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북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
2. 충북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충북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충북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학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소 담당자가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 개정이유

◇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24. 10. 22. 신설, 시행일 2025. 4. 23.)
<신 설>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장애인 보조견은 4가지 종류**로 구분됨.

구분	내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개
청각장애인 보조견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훈련된 개
지체장애인 보조견	물건전달, 문 개폐 등 행동을 도와주도록 훈련된 개
치료도우미견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인식 개선 대책 마련을 조치함**.

○ 개선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 및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생략)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해야 한다.

제11조～제12조 (생략)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13조～제22조 (생략)

2 【일부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24. 10. 16. 신설, 시행일 2025. 4. 17.)
<신 설>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④~⑤ (생략)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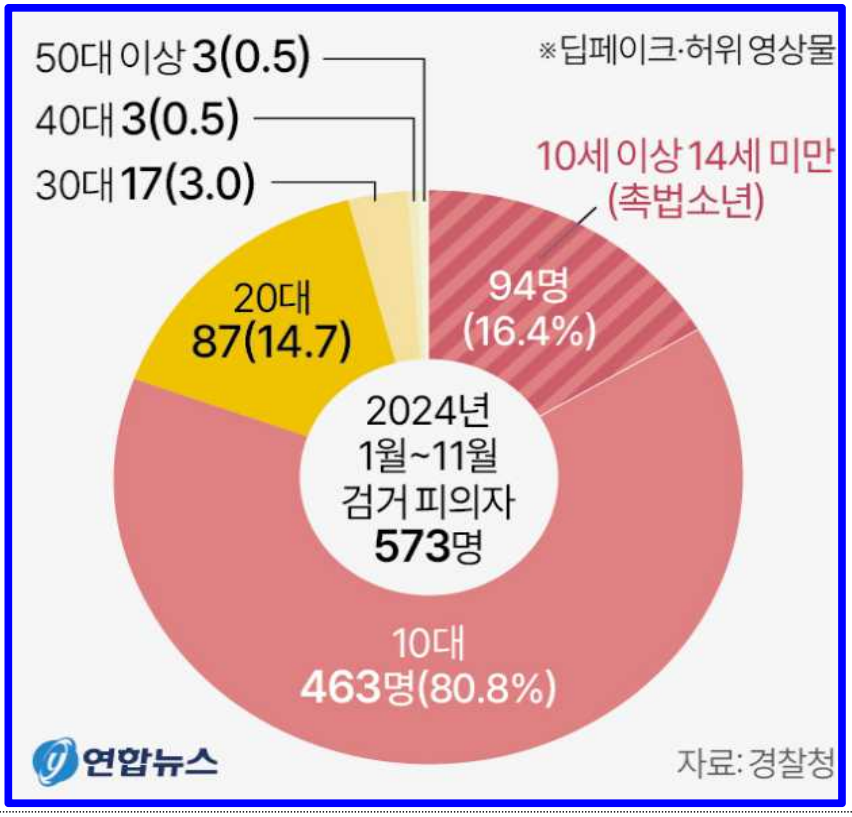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최근 **딥페이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찰청에 따르며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649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573명을 검거**하였음. ※ **573명 중 10대가 463명(80.8%)**

○ 급속히 확산되는 **딥페이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위법을 개정(2025. 4. 17. 시행)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우리 도 역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검거 피의자 연령별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7조에 따른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예방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6.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구축·운영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및 긴급보호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사법 절차상 필요한 조력 제공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 연계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연계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등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인식개선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22호(통권 제260호), 김지현】

◇ **오늘날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일상화**되었다. 더불어 정신적·신체적 발달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내 소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특성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 **2023년 미국 연방 공중보건임무단**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유해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미국의 각 주(州)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過依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행하고 있다. 주법(州法)을 통해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과 관련된 청소년 이용에 대하여 이용·운영·정책 측면에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소년이 SNS 이용 조절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는**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미디어 의존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한다는 **입법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논의 중**이다.

◇ 이에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향후 관련 입법 추진 시 참고할 내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 도입

❍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에서 **대부분의 고등학생(92.8%)과 중학생(89.2%)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주일 중 5일 이상 이용**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u>고등학생은 74.4%, 중학생이 68%에 이른다고 조사</u>되었다<그림1>. 또한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시 **SNS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청소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그림 1 SNS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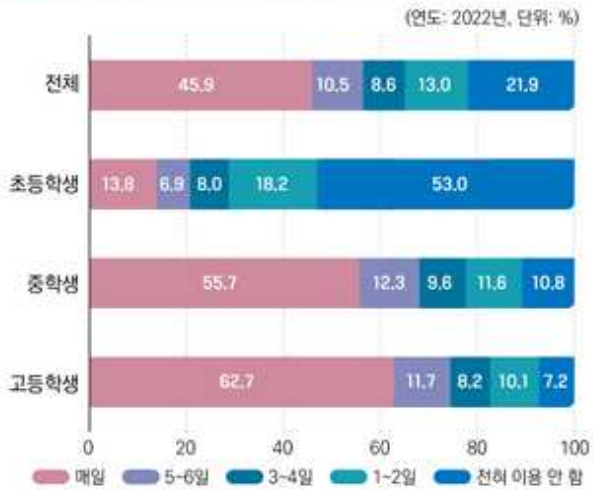


그림 2 SNS 이용 조절 어려움(스마트폰 이용 관련)



❍ **미국에서는 2023년 공중보건임무단 의무총감**(U.S. Surgeon General)이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미국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거의 일상적인 것으로서 <u>13세~17세 청소년의 최대 95%가 소셜미디어플랫폼을 사용</u>하고 있고, <u>3분의 1이상이 ‘거의 계속해서(almost constantly)’ 사용</u>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소셜미디어’ 또는 ‘소셜미디어플랫폼’이란**, 미국 주법(州法)에서 각각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체로 <u>①서비스 내 이용자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interact socially)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u>

온라인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②이용자들이 로그인 등의 목적으로 프로필을 만들 수 있으며, ③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메시지보드, 채팅룸, 비디오 채널, 메인 피드(feed) 등을 통하여 생성·게시할 수 있다.

❍ **보고서는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 시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청소년 시기는 **뇌발달과 정체성·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타인의 의견, 타인과의 비교에 취약하므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에 청소년이 감정적으로 민감**하다고 설명한다. 관련 연구에서 **소셜미디어를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불안 등 정신건강상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 또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설계 및 원치 않은 콘텐츠에의 노출, 자살·자해 등의 **유해 콘텐츠 역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고,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알림 기능, 인기도 정량화 표시 기능(예: 좋아요) 등에 의한 과도한 이용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에 현재 **미국 연방은** 온라인플랫폼(소셜미디어 포함)에서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아동 온라인 안전법(안)」을 발의하여 논의 중**이다. **별도로 주(州)에 따라서는 주법을 통하여** ①일정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거나(이용 측면), ②소셜미디어플랫폼 운영 시 알고리즘 등을 통한 중독적 방식의 정보제공을 규제하거나(운영 측면), ③소셜 미디어의 유해성에 관한 평가나 교육을 시행하는 등(정책 측면)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을 입법**하고 있다.

표 1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 입법례 구분

이용 측면	운영 측면	정책 측면
• 연령확인 및 부모동의 시행 • 부모의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중독성 피드 규제 • 미성년자 개인정보 기반의 정보처리 제한 •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전략 시행	• 데이터보호 영향평가 시행 • 소셜미디어 교육 시행

❍ 우리나라는 **제22대 국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논의 중**이다. 이에 **미국 각 주의 관련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에 참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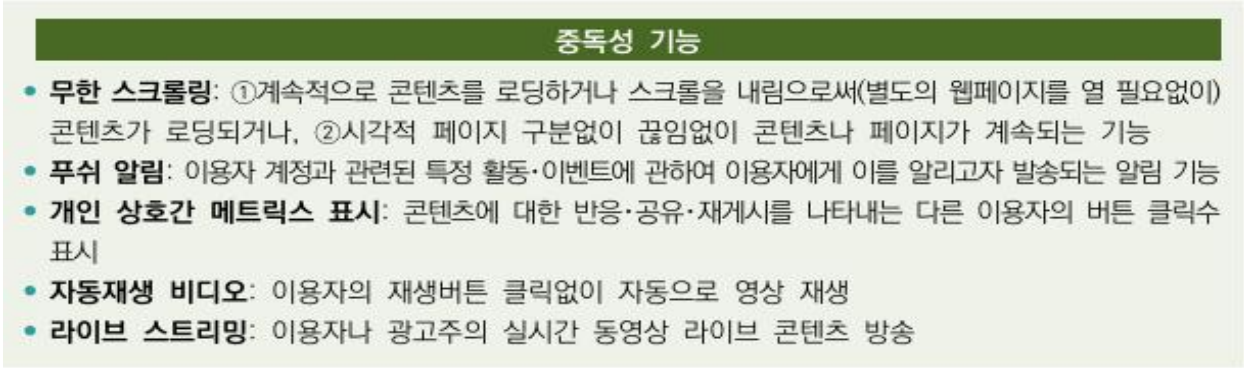
□ 이용 측면

1. 연령확인 및 부모동의 시행

❍ **루이지애나주는** 2023년 6월 「안전한 온라인 아동 상호작용 및 연령 제한법」(Secure Online Child Interaction and Age Limitation Act)을 제정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플랫폼 계정 보유를 규제한다.** 전세계적으로 500만명 이상의 계정가입자를 둔 소셜미디어플랫폼에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이하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소셜미디어플랫폼의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소셜미디어플랫폼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모 동의(consent)를 얻도록 규정하였다(제51편 제1752조).

❍ **플로리다주는** 2024년 3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 및 중독성 기능을 가진 소셜미디어플랫폼'의 경우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14세나 15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계정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고, 부모 동의를

얻지 않은 소셜미디어플랫폼은 계정 보유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제XXXIII편 제501.1736조)



2. 부모의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루이지애나주 법률**은 소셜미디어플랫폼이 **미성년자 계정 보유에 동의한 부모에게 해당 계정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일별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포함된다(제51편 제1754조).

□ 운영 측면

1. 중독성 피드 규제

❍ **뉴욕주는** 2024년 6월 「아동대상 중독성 피드 악용 중지법」(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 for Kids Act)을 제정하고, **이용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것을 소셜미디어플랫폼이 알고 있는 경우 부모의 동의없이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 **'중독성 피드'(Addictive feed)란**, 생성·공유된 미디어(문자, 이미지, 동영상)가 이용자에게 게시될 때, '해당 이용자와 연관된 정보를 기반으로' 권장·선택되거나 게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온라인서비스(웹사이트, 앱 포함)를 의미한다.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나, 특정 검색이나 질의에 대한 응답만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일반상법전 제1500조).

- '중독성 소셜미디어플랫폼'(중독성 피드 제공)의 운영자는 ①이용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했거나, ②중독성 피드 제공에 대하여 '인증가능한 부모동의'를 얻은 경우는 중독성 피드를 제공할 수 있다(제1501조). '야간 알림' 역시 부모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미성년자인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발송하는 것은 금지된다(제1502조).

2. 미성년자 개인정보 기반의 정보처리 제한

❍ **루이지애나주 법률은** 소셜미디어플랫폼이 ①(기존에 이미 연결되어있던 이용자가 아닌 한) **성인이 16세 미만 계정보유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②**계정보유자의 개인정보(나이·위치 제외)에 기반한 광고 게시를 금하며**, ③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게시물, 콘텐츠, 메시지, 문자, 이용활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51편 제1753조).

❍ **플로리다주는** 2023년 6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소셜미디어플랫폼 내 아동 보호를 규정**하였다. 2024년 7월 1일부터 **'18세 미만 아동**이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셜미디어플랫폼'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동에게 상당한 피해나 개인정보침해 위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수집·공유·보관·사용 및 프로파일링 등이 제한된다**(제XXXIII편 제501.1735조).

- '아동에게 상당한 피해 또는 개인정보침해 위험'에는 ①중독행위(addictive behaviors)를 조장하는 사용 패턴, ②자살·섭식장애·약물남용 등 정신건강 문제, ③신체적 폭력 및 온라인 학대·괴롭힘, ④도박 홍보 등이 포함된다.

3.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전략 시행

❍ **텍사스주는** 2023년 6월 「온라인 상 아동보호를 위한 부모권한부여법」(Securing Children Online through Parental Empowerment Act)을

제정하였다. 소셜미디어플랫폼 등의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18세 미만의 이용자가** 아래 내용을 홍보·미화·활성화하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전략'을 개발·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상업·상거래법전 제509.053조).

유해 콘텐츠 내용

- 자살, 자해 또는 섭식장애
- 약물 남용
- 스토킹, 괴롭힘 또는 학대
- 그루밍, 인신매매, 아동포르노 또는 기타 성적착취, 성적학대

- 해당 전략은 ①대상 이용자에의 게시를 차단하기 위한 '유해 콘텐츠' 목록의 작성·유지, ②목록 내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한 필터링 기술 사용, ③되풀이되는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 사용, ④필터링 회피에 사용되는 키워드의 데이터베이스 생성·유지, ⑤필터링 기술의 효율성 확인을 위하여 사람이 수행하는 모니터링 시행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정책 측면

1. 데이터보호 영향평가 시행

❍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 9월 「캘리포니아주 연령에 적합한 디자인 규약법」(California Age-Appr opriate Design Code Act)을 제정하였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서비스'**(소셜미디어플랫폼에 한정되지 않음) **제공자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보호 영향평가'**(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를 **완료**하고 **평가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한다(민법전 제1798.99.31조).

- 데이터보호 영향평가에는 ①유해 콘텐츠 등의 서비스디자인이 아동에게 유해한지 여부, ②시스템상 알고리즘이 아동에게 미치는 유해성 여부, ③미디어 자동재생, 이용시간에 따른 보상제, 알림 기능 등이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증가·유지·확대시키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주(州)법무장관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시행한 영향평가의 목록 및 평가서를 제출한다.

2. 소셜미디어 교육 시행

❍ **플로리다주는** 2023년 5월 관련 입법을 통해 주(州) 공립학교 필수 교육(종합적 연령·발달 적합 교육)과 관련하여 **6학년～12학년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의 사회적·정서적·신체적 영향'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교육 내용에는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중독 포함), 소셜미디어 내 허위정보 유포, 소셜미디어가 행동을 조작하는 방법, 온라인 내 자료 공유의 영속성, 개인보안 유지 및 인터넷 내 사이버괴롭힘·약탈행동 등의 식별, 인터넷 내 의심스러운 행동 신고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제XLVIII편 제1003.42조(2)(o)).

□ 시사점

❍ **미국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하여** 각 주의 주법으로 ①연령확인, 부모동의 및 연령별 이용제한(이용 측면), ②중독성 피드 및 개인정보 기반의 정보처리 제한(운영 측면), ③영향 평가 및 교육 시행(정책 측면) 등 다양한 내용의 법률을 시행 중이다.

❍ 우리나라 역시 **제22대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중독성 콘텐츠' 제공 및 일별 이용한도 설정에 있어 부모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연령 확인 후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특성과 청소년 시기의 특성(수면과 성장의 관계, 타인에 대한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입법례 중 청소년 계정에 대하여 ① '중독성 피드'(알고리즘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정보)의 야간 시간대 제공 규제**, ②**중독성 기능(자동재생, 인기도 정량화**

표시, 무한 스크롤링 등)의 제한, ③소셜미디어의 사회적·정서적·신체적 영향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행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또한 **우리 법률안의 정의 및 규제의 구체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국의 법률 시행에 따른 연령확인·부모동의 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의 내용, 중독성 피드의 구체적 요건,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및 각 주(州) 규제 연령 사항 등이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제어	소셜미디어, SNS중독, SNS과의존, 중독성피드, 청소년정신건강

추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23
- U.S. Surgeon General's Advisory, Social Media and Youth Mental Health, 2023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otential Risks of Content, Features, and Functions, 2024

2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16호, 통권 제254호, 최창수】

□ 도입

❍ **자본시장에서의 공시제도**는 주식시장 상장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기반한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 사안으로 확립되었다.

❍ **최근에는 특히 환경(E) 측면에서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위한 필요자금이 조달되는 자본시장에서의 기후 공시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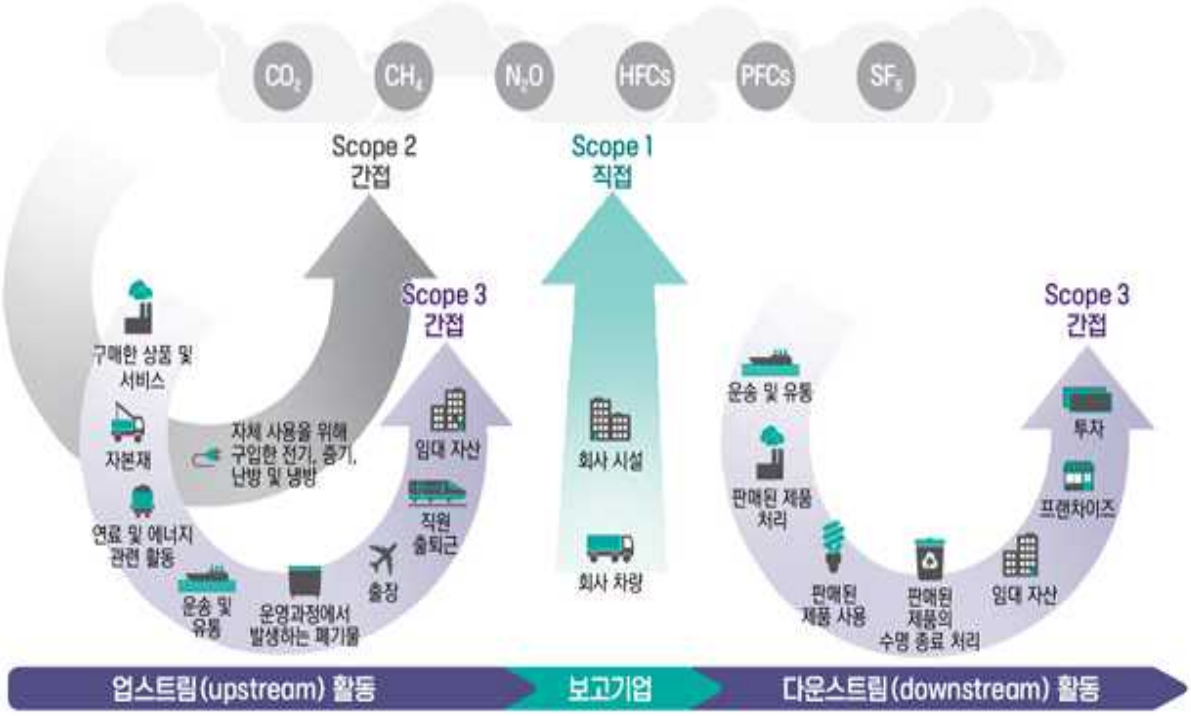
- 기존 공시제도 체계로 새롭게 도입되는 **기후공시제도는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영향과 이에 대한 완화·적응 전략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 기후공시제도의 골자는 기후위험과 관련된 재무적 측면의 중대한 사항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재무적 측면의 중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다.

❍ **세계자원연구소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가 1998년에 설치한 **'온실가스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 이하 'GHG 프로토콜')은 2001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회계처리·보고기준서를 발표**하였다.

- **이 기준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해야 하는 범주(Scope)를 **배출원에 따라 Scope 1, 2, 3으로 구분**한다.
- **Scope 1은** 기업이 소유·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Scope 2는 기업이 전기, 스팀 등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간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각각 의미하며,
 Scope 3은 그 밖에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과정인 **가치사슬(value chain) 또는 공급망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배출량**을 의미한다.

❍ Scope 3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중인 에너지 100%를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 약정인 'RE100'이 시작**됨에 따라, **Scope 3 배출량 감축이 탄소중립·감축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었다. 이에 과거에는 Scope 1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Scope 3까지 공개 대상 범주를 확대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림 1 'GHG 프로토콜'에 따른 Scope 분류체계 및 관련 활동



*출처: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orld Resources Institute, 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5), p.5

❍ 기후공시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15년에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를 설치하였다.

- TCFD는 2017년에 자발적 재무정보 공시방법을 제시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이 GHG 프로토콜에 따라 Scope별 배출량을 공개하고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권고하였다.

❍ **최근 주요국**은 TCFD 공시방법에 기초하여 **자국의 기후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했거나 제정**하고 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2024년 3월에 기후공시규칙을 최종 승인하였고, 이 규칙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미국 주(州)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2023년 10월에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 **유럽연합(이하 'EU')은** 2022년 11월에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을 **제정**하였고, 이 지침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현재 **이 지침의 적용 대상 기업은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그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이하 'ISSB')는 2023년 6월에 기후공시가 포함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였다. ISSB 공시기준을 채택하려는 국가들은 이에 따른 **자국의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 국가는 자국의 공시기준을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ISSB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2024년 4월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 공개초안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구체적으로 공시의무 시행 시기, 보고연도, 보고기업, 공시 위치, 공시 시점, Scope 3 공시의무, 제3자 검증의무 등 주요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이에 기후공시 의무화에 관한 미국과 EU의 법령 및 ISSB의 공시기준을 살펴보아, 우리나라의 기후공시 관련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 주요쟁점

❍ **미국과 EU의 관련 법령 및 ISSB 공시기준은 모두** TCFD 공시방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므로 대부분 **공통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국은 **다음 4가지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1. 보고기업(reporting company)의 범위

- 각국은 자국의 기후공시 관련 법령에 따라 기후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보고기업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증권거래소 상장 여부, 기업의 규모가 보고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4. 중대한 사항(material matter)의 정의

- 일반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은 중대한 사항으로 한정되고, 중대하지 않은 사항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적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대한 사항'이란 용어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할 것인지와 이 용어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2. Scope 3 공시

- Scope 3 배출량은 Scope 1 배출량보다 11배가 높고, 전체 배출량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Scope 3 배출량에 대한 통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사안이다.[8)]
- 다만, 기후정보 제출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Scope 1, 2 공시에 더하여 Scope 3 공시도 동시에 의무화하는 방안, 또는 Scope 1, 2 공시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이후 Scope 3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3. 제3자 검증(third-party assurance)

- 공시된 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는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하다.
- 제3자 검증은 제한적(limited) 또는 합리적(reasonable) 검증으로 구분한다.
 - '제한적 검증'이란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신뢰가 유의미한 수준 이상이지만 합리적 검증보다는 낮은 수준의 검증을 의미한다.
 - '합리적 검증'은 왜곡된 정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완전한 검증은 아니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검증을 의미한다.[9)]

□ 미국

1. 연방법: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규칙

❍ **2024년 3월**에 미국 **SEC는 기후공시 의무화에 관한 최종 규칙**(이하 '**SEC 기후공시규칙**')을 **공개**하였다.

❍ 일반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중대한 사항으로 한정되므로, **미국 연방법에서는 재무적 측면에서 중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 **합리적 투자자가** 증권의 매수·매도 여부 또는 투표의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사항, 또는 합리적 투자자가 해당 사항의 누락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전체 조합이 상당히 변경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중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대한 사항은 정량적, 정성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 **SEC 기후공시규칙은** ①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와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s)에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Regulation S-K' 와** ② 재무제표 및 그 주석에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Regulation S-X' 로 구분**된다.

(1) Regulation S-K

❍ Regulation S-K(연방규정집 제17편 제229부)에 따라 **상장기업은 증권신고서와 연차 사업 보고서상에 SEC 기후공시규칙에서 정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한다. 보고기업이 공시할 사항은 사업전략, 운영결과,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위험에 관한 정보이다.

❍ Regulation S-K에 기재해야 하는 공시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Regulation S-K 증권신고서 및 연차보고서 공시사항

공시사항	구분	내용
	지배구조	•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관리하는 경영진 역할의 특징 및 범위, 위험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에 대해 설명
	전략, 사업모델 및 전망	• 기업의 전략·사업모델·전망에 실제적·잠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향후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단기적 기후 관련 위험 • 기후 관련 위험 완화·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표와 목표를 포함한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내부탄소세 등 포함

공시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위험관리	• 중대한 기후위험 관리절차 및 기업 전체 위험관리 절차 통합방법, 위험관리 전략 중 전환계획
	지표 및 목표	• 기업의 사업과 재무상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 • 탄소상쇄와 재생에너지크레딧(Renewable Energy Credits) 활용 여부 • 지표 및 목표의 이행 경과
	중대한 지출 및 재무적 영향	• 아래의 기업활동 관련 재무적 지출·영향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정보 - 기후 관련 위험 완화·적응 활동 관련 지출, 재무적 추정·가정에 미치는 영향 - 기후 관련 전환계획 이행 관련 지출, 재무적 추정·가정에 미치는 영향 - 기후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관련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 상장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Scope 1, 2 배출량이 중대한 경우 이를 공시하고, 특정 온실가스 요소가 중대하면 해당 요소의 배출량을 세분화하여 공시 • Scope에 따른 배출량 정보는 단계적으로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며, 상장 대기업은 제한적 및 합리적 검증, 상장 중견기업은 제한적 검증 요구

(2) Regulation S-X

❍ Regulation S-X(연방규정집 제17편 제210부)에 따라 해당 **상장기업은 심각한 기후 상황 및 기타 자연조건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의 주석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 이러한 재무제표 주석상 공시는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체계에 따라** 공시 대상에 포함되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Regulation S-X 재무제표 주석 공시사항

구분	세부 사항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비용, 지출경비, 부담금 및 손실 등에 대한 정보, 비용 관련 회수금액
	• 재무제표상 회계연도 종료 시 자본비용·부담금 총액이 투자자들의 자기자본·결손금의 1% 이상(절댓값 기준)이고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 손익계산서상 회계연도의 지출경비·손실금 총액이 세전 손익의 1% 이상(절댓값 기준)이고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구분	세부 사항
탄소상쇄·재생에너지 크레딧 정보	• 탄소상쇄·재생에너지크레딧 활용이 기업의 목표 달성에 중대한 요소인 경우, 이를 활용하여 발생한 자본비용·경비·손실에 관한 정보
재무적 추정 및 가정	• 기후 관련 사건(가뭄, 홍수 등) 및 기후 대응 전환 활동이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추정·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향을 받은 방식에 대한 설명(예,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감가상각과 자산폐기정책 변경 등 기존 추정·가정 변경 필요에 대한 설명)

(3)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정

❍ 연방 증권법상 공시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기존 제재 규정이 SEC 기후공시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에 SEC는 SEC 기후공시규칙 위반자를 상대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SEC 기후공시규칙**에서는 법적 요건에 따른 미래에 대한 예측적 진술(forward-looking statement)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하는 별도의 '세이프 하버' 규정을 신설**하였다.

- 현행법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적 진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면책하고 있다.
- 이번 **SEC 기후공시규칙에서 신설된 요건에 따라 공시하는 모든 정보를 미래에 대한 예측적 진술로 간주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다.

(4) 공시의무 시행연도

❍ SEC 기후공시규칙은 공시의무에 따라야 할 보고기업을 기업의 시가총액과 공시사항에 따라 세분하여 그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 증권신고서 및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상의 '기후 관련 공시' 의무는 2025년부터 시작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기업 정보에 기초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기업 공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증권신고서 및 연차보고서상의 '지출 및 재무적 영향', Scope 1, 2 및 이에 대한 제한적·합리적 검증 의무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기업 규모별 직전 회계연도의 정보에 기초한 각 공시의무 시행연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보고기업별 공시의무 시행연도

구분*		상장 대기업	상장 중견기업	상장 소기업, SRC, EGC
증권신고서 및 연차보고서 (Reg. S-K)	기후 관련 공시	'26	'27	'28
	지출 및 재무적 영향	'27	'28	'29
	Scope 1, 2	'27	'29	-
	Scope 1, 2 제한적 검증	'30	'32	-
	Scope 1, 2 합리적 검증	'34	-	-
재무제표 주석(Reg. S-X)		'26	'27	'28

* 상장 대기업(Large Accelerated Filer):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상장 중견기업(Accelerated Filer): 시가총액 7천5백만 달러~7억 달러 미만 +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
기타 상장 소기업(Non-Accelerated Filer): 시가총액 7천5백만 달러 미만 + 연 매출 1억 달러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Smaller Reporting Company), 신생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y)

❍ 다만, **SEC 기후공시규칙 시행에 반대**하는 25개 주정부 법무장관, 에너지기업, 환경단체 등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다수의 소송사건들이 하나로 병합되었고, 제8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 Circuit)이 병합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 **SEC의 기후공시의무 부과가 SEC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는지 여부**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다.
- SEC가 이 규칙의 시행을 정지한다고 발표하여, 실제 규칙 시행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2. 캘리포니아 주법

❍ 연방 차원의 SEC 기후공시규칙과 별도로, **주(州) 차원에서 최초로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에 아래의 3가지 법률을 제정**하여,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규정과 함께 탄소상쇄(carbon offsets)에 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린워싱: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

(1)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

❍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한 법률**이다.

-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고 **직전 회계연도 연 매출이 미화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적용**된다.
- 이러한 공시를 위해 GHG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① Scope 1, 2 공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한적 검증을 의무화한 후 2027년부터 합리적 검증을 의무화

② Scope 3 공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합리적 검증을 의무화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가 **이 법률을 집행**한다.

- 2025년 초까지 공시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법률 미준수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공정경쟁이나 허위광고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 건당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특히 Scope 3 배출량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선의로 제출한 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2030년 이전까지는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벌금을 부과**한다.

(2) 「기후관련재무위험법」

❍ **「기후관련재무위험법」**(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ct)은 **격년마다 기후 관련 재무위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고 **직전 회계연도 연 매출이 미화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상장기업·민간기업(보험회사 제외)에 적용**된다.
- 보고서는 TCFD 공시방법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보고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위험보고서에는 기후 관련 재무위험을 축소하거나 적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고서를 해당 **공시용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가 이 법률을 집행하며, 법률 미준수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자발적탄소시장공시법」

❍ **「자발적탄소시장공시법」**(Voluntary Carbon Markets Disclosure Act)은 기후공시 확대에 따라 **탄소상쇄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법률**이며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자발적 탄소상쇄를 판촉, 판매하는 기업은** 배출량 감축을 추정할 때 프로토콜(protocol), 프로젝트의 장소, 시작 시기 및 유형, 지속가능한 기간(durability), 독립된 검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비해, 자발적 **탄소상쇄를 구매하는 기업은** 탄소상쇄를 판매하는 기업의 회사명, 프로젝트 명칭 및 유형, 독립된 검증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 또한 **자사의 사업·재화·용역이 탄소중립, 탄소제로, 탄소감축 달성에 기여한다고 주장(claim)하는 기업은** 사업목표의 경과를 측정하는 방법, 독립적 검증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문서로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화·용역 관련 배출량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보고서, 소셜미디어, 기존 광고 등 사업판촉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지방정부의 검사나 변호인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 **법률 미준수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공정경쟁이나 허위광고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금지명령을 내리고 위반 건당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기타 주요 주의 법률안

❍ 뉴욕주, 일리노이주, 워싱턴주 등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법을 참조하여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 **뉴욕주에서는** 2023년 1월과 3월에 상원법안 SB897C호와 SB5437호로 각각 탄소배출량 공시에 관한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안)'**(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과 기후위험 공시에 관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Law) 개정 법률안' 이 발의**되었다.

- 이 2개 법률안은 캘리포니아 주법과 대부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기후관련 재무위험법**」**은 2년**마다, 이에 상응하는 **뉴욕주 법률안 SB5437호는 1년**마다 기후위험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 법률로 통과되면 보고기업은 2년 후부터 공시를 시작해야 한다.
- 현재 SB897C호에 대한 입법절차는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SB5437호에 대한 입법절차는 상원 보험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 **일리노이주에서도** 2024년 1월에 하원법안 HB4268호로 **'기후기업책임법(안)'**(Climate Corporate Accountability Act)이 **발의**되었다.

- 일리노이주에서 **연 매출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Scope 1, 2,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이 법률안도 캘리포니아 주법과 대부분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법과 달리 Scope 3 공시의무가 Scope 1, 2 공시의무와 같은 연도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일리노이주 의회는 1차 독회를 마쳤으며 현재 법률안은 하원규칙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에 회부된 상태이다.

❍ **워싱턴주**에서도 2024년 1월에 상원법안 SB6092호로 **‘워싱턴주 기후 기업데이터책임법(안)’**(Washington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이 **발의**되었다.

- **연 매출이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2026년에 Scope 1, 2에 따른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며, **2027년부터 Scope 3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법률안은 캘리포니아주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과 거의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기후위험공시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 법률안은 상원에서 통과된 후 하원에서 3차 독회를 진행하고 있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기후공시 의무화 법률을 제정하는 두 번째 주(州)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유럽연합

1.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 **EU는** 기후공시 등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두고 있다.**

- 기업이 신고해야 할 사회적, 환경적 공시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 **EU 기업뿐만 아니라 EU 이외의 기업에 모두 적용**되며, 공시사항에 따라 일정 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공시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 「CSRD」에 따른 보고기업의 기준과 직전 회계연도의 정보에 기초한 공시의무 시행연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 보고기업별 공시의무 시행연도

보고기업	기준	시행연도
공익단체	• 500명을 초과하는 직원을 둔 상장된 EU 기업	'25
EU 기반 대기업	• 다음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EU 거래소 상장기업: ①직원 250명 이상, ②최소 매출액 4천만 유로, ③최소 총자산 2천만 유로	'26

보고기업	기준	시행연도
중소기업	• 대기업 및 초소규모 기업(micro-enterprises) 이외의 EU 거래소 상장기업. 다만, 중소기업은 2028년까지 지침의 적용 또는 배제를 선택하여 2028년 이후까지 보고의무 연기 가능	'27
비EU 모기업	• EU 거래소 내 연 매출이 1억 5천만 유로이고 EU 내 상당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지사를 두고 있는 비EU 기반 기업	'29

❍ **보고기업은** 「CSRD」에 따른 공시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을 **준수**해야 한다.

- ESRS 1(일반요구사항)은 ESRS에 따른 공시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ESRS 2 (일반공시사항)는 모든 「CSRD」에 따른 보고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필수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 ESRS 1과 ESRS 2는 각각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3가지 주제별 요구사항과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환경(E) 주제와 관련**하여, ESRS E1(기후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업의 전환계획
- 기업이 직면한 중대한 기후변화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 이러한 요소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델 간의 상호작용
- 기업의 Scope 1, 2,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중대한 물리적 전환 위험에 따른 잠재적 재무 영향
- 기후변화가 잠재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 특히 「CSRD」는 소위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을 **규정하여, 아래 2가지 측면의 중대한 사항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영향 중대성'(impact materiality)**: 보고기업의 전체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기업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
- **'재무적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이 위험·기회 창출 방법 등 기업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 「CSRD」에 따라 공시사항에 대하여 **독립된 감사인의 제한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CSRD」에 따라 각 EU 회원국은 **일반인이 보고기업의 사업보고서**(management reports)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고기업의 웹사이트에 사업보고서를 게시**하거나 **요청 시 사업보고서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의무화**할 수 있다.

❍ 「CSRD」의 규정은 **EU 회원국들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EU 회원국이 이 지침에 부합하는 자국의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 특히 「CSRD」에 명시되지 않은 벌칙에 관한 규정을 자국의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
- EU 집행위원회(EC)는 「CSRD」에 따라 2026년 6월까지 세부적으로 산업부문별 기준, 상장 중소기업 기준, 비EU 기업 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다.

2.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3D)

❍ **EU는 2024년 7월**에 현행 「CSRD」를 보충하는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3D')을 **제정**하였다.

-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위한 전환계획 채택 및 실행 요건과 함께 기업의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 다만 「CSRD」에 따른 보고기업은 「CS3D」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CSRD」상 보고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이 「CS3D」의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에 따른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CS3D」는 2024년 7월 24일에 발효되었다. 각 EU 회원국은 이에 부합하는 자국의 법령을 2026년 7월 26일까지 제정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CS3D」는 2027년부터 **'직원이 5천 명 이상이고 전 세계 순매출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대규모 EU 기업' 및 'EU 내 순매출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비EU 기업'에 적용**된다. 대규모 EU 기업의 경우,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직원수 기준은 1천 명**으로, **매출액 기준은 4억 5천만 유로로 하향 조정**된다.

❍ 또한 **2029년부터 EU 모기업의 글로벌 순매출** 또는 **비EU 모기업의 EU 시장 내 매출**이 **8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제3자와의 로열티가 2,250만 유로를 초과**하는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지침이 적용된다.

❍ **중소기업(SME)은 「CS3D」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보고기업의 공급업체라면 간접적으로 이 지침을 따라야 할 여지도 있다.

❍ **보고기업은 자사, 자회사, 협력업체인 공급업체, 유통·운송·보관업체의 각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인권·환경 측면의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 인권·환경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심각한 영향이 확인**되면 **이를 예방, 완화,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여기에는 아동노동, 근로자 착취, 오염 및 생물다양성 손실 등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포함된다.

❍ 「CS3D」는 보고기업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보고기업은 이러한 전환계획을 통해 사업모델과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양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특히 2015년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에 따라 지구 표면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2050년까지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른 목표
-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탈탄소화의 수단과 조치에 대한 설명
- 전환계획을 지원하는 투자 및 자금에 대한 설명 및 정량화
- 전환계획과 관련된 집행, 경영 및 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

❍ 「CS3D」는 각 EU 회원국 감독기관이 미준수 기업에 대해 전 세계 순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계약 체결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구체적인 벌칙은 각 EU 회원국의 감독기관이 정한 규정과 민사상 책임에 관한 자국의 규정을 통해 집행된다.

□ ISSB 공시기준 채택 국가

❍ ISSB는 2023년 6월에 지속가능성 자율공시에 관한 글로벌 기준인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일반공시기준)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기준)를 발표하였다.

- **ISSB 공시기준은** 기업이 **자사의 시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중대한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재무적으로 중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을 누락,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obscure) 하게 하면, 재무보고서 주요 사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을 중대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5 ISSB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공시기준

구분	IFRS S1(일반공시기준)	IFRS S2(기후공시기준)
공시 내용	• 지속가능성 관련 위기·기회 관련 정보	• 기후 관련 위기·기회 관련 정보
	• 지속가능성 관련 위기·기회에 대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의 4가지 핵심요소별 정보	• 기후에 대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의 4가지 핵심요소별 정보
용어 정의	• 지배구조: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관리하는 의사결정기구 및 절차 • 전략: 기후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등 • 위험관리: 위험 식별, 평가, 모니터링 절차 • 지표·목표: 산업전반 지표, 산업기반 지표 및 기후 관련 목표	

❍ 보고기업은 기후공시에 대한 IFRS S2에 따라 다음의 구체적인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지배구조 단체에 대한 정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감독하는 데 사용되는 지배구조 절차, 관리 및 절차에서 경영진의 역할

- 재무보고서 사용자의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는 정보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확인·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절차
- 전략적 목표 달성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립한 정량적·정성적 기후 관련 목표, 온실가스 목표를 포함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목표

❍ **주요국은 ISSB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자국의 공시기준 및 관련 규정을 준비·완성하는 과정**에 있다.

- **호주의 경우**, **호주회계기준위원회가** 2024년 1월에 **기후공시 표준안을 발표**한 후, 호주 정부는 기후 관련 재무적 보고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시장 인프라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재무부 법률 개정법률(안)'**을 2024년 3월에 **발의**하였다.
-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자국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준비**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2024년 4분기까지, 영국은 2025년 1분기까지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 비교 및 요약

❍ 다음 표는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SEC 기후공시규칙과 캘리포니아주 기후공시 관련 법률, EU 「CSRD」, ISSB 공시기준의 주요 사항을 비교한 것이다.

표 6 주요국의 법정 기후공시 관련 사항 비교표

구분	미국		EU	ISSB 기준 채택국가
관련 법령	SEC 기후공시규칙 (Regulation S-K, S-X)	캘리포니아주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 「기후관련재무위험법」 「자발적탄소시장공시법」	「CSRD」 (ESRS 1, 2)	ISSB 공시기준 (IFRS S1, S2)
공시 방법	법정 공시			각국 결정
보고 기업	상장기업 (비상장 소기업 및 신생성장기업 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하는 일정 수익 이상의 기업	EU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비EU 기업	각국 결정

구분	미국		EU	ISSB 기준 채택국가
공시 위치	연차 사업보고서			
Scope 3 공시	-	O	O	O
제3자 검증	• 상장 대기업: '29년부터 제한적, '33년부터 합리적 • 상장 중견기업: '31년부터 제한적	• Scope 1, 2: '26년부터 제한적, '27년부터 합리적 • Scope 3: '30년부터 제한적	제한적 검증 (향후 합리적 검증 고려)	각국 결정
중대한 사항의 정의	• 합리적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정량적·정성적 고려사항 포함)	-	-	• 누락/잘못 기재/불분명하면 투자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항

□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ISSB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공시기준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공시기준, 보고기업,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

-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에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기후를 포함한 ESG 정보의 **한국거래소 자율공시의 활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024년 4월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공시기준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 **KSSB 공시기준 초안**에서는 의무공시 기준으로 **IFRS S1, S2를 준용**하였고, 정책 목적을 고려한 공시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표 7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 기준	제1호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IFRS S1 기반)
	제2호	• 기후 관련 공시사항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IFRS S2 기반)
추가공시 기준	제101호	•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선택사항	•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장되는 사안

❍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는 자율 공시와 법정 공시로 구분**된다. **자율 공시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공시**(이하 '거래소 공시')를 의미하며, **법정 공시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를 의미**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ESG정보 자율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2026년 이후 국내 ESG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다.

❍ **법정 공시와 관련하여**,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9조제1항).

- 이러한 사업보고서에는 **증권 발행인의 사업상황,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다.
- 사업보고서의 내용에 **허위·부실기재**가 있거나 **중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

❍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에 기후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상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총 6건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2024년 8월 말 현재 동일한 취지로 총 2건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시사점

1. 법정공시

(1) 거래소 공시와의 비교

❍ **미국, EU 등 주요국**은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 공시를 위한 법령을 제정했거나, 이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다음 표는 법적 책임 및 제재의 정도와 관련하여, 우리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 공시**와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거래소 공시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다.

표 8 우리나라의 법정 공시와 거래소 공시 비교표

구분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	거래소 공시
대표이사 등 확인	• 대표이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 담당 이사의 확인	-
행정 제재	• 금융위원회가 제재 권한 보유(과징금 부과, 정정명령, 증권 발행 및 거래 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수사기관 통보)	• 거래소와 상장사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어 행정적 제재 부과 불가 • 거래소 규정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위반 제재금, 매매거래 정지 등의 제재만 가능
형사 책임	•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에 대해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등 처벌(「자본시장법」 제444조제13호)	• 적용되는 처벌 규정 없음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 적용 가능(부정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제4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벌 가능)
민사 책임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등):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 손해인과관계 추정, 거래인과관계 추정의 법리 적용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규정(제170조)에 따른 청구 가능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규정(제170조)에 의존(원고 투자자가 「민법」 제750조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있음)

*출처: 국회 정책세미나, 제3회 ESG 제도화 포럼, ESG 공시 제도 관련 주요 쟁점,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박영윤 변호사 주제발표(2023.11.)(일부 수정·보완)

❍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여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기후공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할 수 있다.

- **거래소 공시**를 통해 기후공시제도가 도입되면 허위·부실 기재 또는 중대한 사항 미기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없으며**, 한국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제재로 **책임 수위가 낮아진다.**
- 이에 비해, **법정 공시를 통해 기후공시제도가 도입**되면, 대표이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 담당 이사가 공시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기업에 행정적 제재 및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 **기후공시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면책규정

❍ 엄격한 법적 책임이 보고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근거에 따라 공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에서 면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 보고기업의 사업보고서에는 시장 전망이 포함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제출한 정보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 이에 보고기업이 법적 의무에 따라 제출하는 예측정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조문이 기업의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미국 SEC 기후공시규칙은** 보고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의 정보를 미래에 대한 예측적 진술로 간주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다.

❍ **우리 「자본시장법」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대한 배상책임) **제2항**에서는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기후공시 보고의무 관련 사항이 신설되는 경우, 보고기업이 제출한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에 대해서는 제162조제2항을 준용한다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미국 SEC 기후공시규칙에 신설된 '세이프 하버' 조문을 참조할 수 있다.

(3) 공시 위치

❍ 주요국 기후공시 관련 법령과의 국제적 정합성 및 공시정보의 활용성을 고려하면, 우리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적 공시가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미국과 EU 법령 및 ISSB 공시기준에서는 공통적으로 보고기업의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후공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 중 연간 사업보고서가 투자자들에 의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 보고서에 기후정보가 공시되면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2. 주요 쟁점 관련 사항

(1) 보고기업의 범위

❍ 주요국은 기후공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고기업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미국 SEC 기후공시규칙은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고기업을 구분하며, **EU는** 기업의 규모를 **자산총액, 매출액, 직원수에 따른 3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보고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미국 SEC 기후공시규칙은 모든 상장기업을 보고기업으로 명시**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보고 기업의 범위를 **상장 대기업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확대·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우리 「자본시장법」 제159조제2항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기후공시 의무가 적용된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 보고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매출액, 직원수를 기준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향후 상장 중견기업, 비상장기업에까지 기후공시 의무를 확대해야 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후공시 의무가 적용될 기업의 범위와 공시의무 시행 시기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2) Scope 3 공시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전체 공급망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Scope 1, 2, 3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Scope 3 배출량**이라는 점에서 **Scope 3 공시가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핵심 사안**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 EU 「CSRD」, ISSB 공시기준은 공통적으로 Scope 3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미국 SEC 기후공시규칙에서는 Scope 3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Scope 3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뉴욕주, 일리노이주, 워싱턴주에서 발의된 법률안**에서도 **Scope 3 공시의무를 명시**하되 **1~2년의 유예 규정을 두고 있다**.
- **EU「CSRD」에서도 Scope 3 공시를 의무화**하되, 「CSRD」가 시행되는 첫해에는 Scope 3 공시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 **ISSB 공시기준에서도** 모든 보고기업에 대해 **Scope 1, 2와 함께 Scope 3 공시를 의무화**하되, Scope 3 공시의 경우 1년을 유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Scope 1, 2뿐만 아니라 Scope 3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 우리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에 기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Scope 1, 2, 3으로 분류하고 각 Scope별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문을 포함할 수 있다.
- 다만, **Scope 3 공시가 보고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공시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일부 보고 기업들을 위해 **Scope 3 공시를 시행하기 전에 일정한 유예기간 (가령 1년 등)을 둘 수 있다**.

(3) 제3자 검증

❍ **대부분 주요국은** 기후공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거 없는 기후정보공시에 대해 **벌칙규정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3자 검증은** 기후공시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사전적 절차이므로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후적 벌칙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 **사전적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이와 동시에 사후적 벌칙 및 별도의 **그린워싱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기준에 따라 **제3자 검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cope 1, 2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까지 제한적 검증**을, 그 이후 합리적 검증을 의무화하고, **Scope 3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후에 합리적 검증을 의무화**할 수 있다.

(4) 중대한 사항에 대한 정의

❍ **미국 SEC 기후공시규칙**과 **ISSB 공시기준**에서는 관련 사항이 공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대한 사항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미국 연방법에서는 정량적·정성적 사안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중대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 ISSB 공시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면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중대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 **우리도** 미국 연방법과 ISSB 공시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참조하여 그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기후공시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중대한 사항을 정의하는 조문을 추가할 수 있다.

3.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 및 대응

(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

❍ 미국 연방 차원의 SEC 기후공시규칙을 준수하는 기업은 이와 별도로 주 차원의 기후공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23년에 제정한 기후 관련 법률은 다른 주가 이에 따른 법률을 제정할 때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미국 여러 주에서 수출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다는 점에서 개별 주의 규제방식 및 입법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

❍ 특히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대기자원위원회에 부여한 아래의 권한과 재량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Scope 3 공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선의로 공시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2030년 이전까지는 불이행한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한다.
-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탄소상쇄 공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불공정경쟁 또는 허위광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EU 「CS3D」

❍ EU가 2024년 6월에 제정한 **「CS3D」는** 가장 최근에 제정되어 **주목해야 하는 기후공시 관련 법령**이다. 2027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2028년부터 실사의 내용 공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 **「CS3D」는** 기업의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 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기업 활동이 인권·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규율할 예정**이다.

- **일정 규모 이상의 EU 기업**뿐만 아니라, **EU 내 순매출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비EU 기업에 대해서도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비EU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CS3D」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실사 및 공시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제어	기후공시제도,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규칙,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국제회계기준,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공시기준

관련 자료

- 국회 정책세미나,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2024.7.)
- 국회 정책세미나, 제3회 ESG 제도화 포럼(2023.11.)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24.7.)
- Mayer & Brown, Climate change: Disclosure initiatives and board corporate governance considerations, 2024
- Norton Rose Fulbright, Review of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regimes around the world, June 2024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2월 첫째주	행정안전	○ 외국인주민 유입이 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혁신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건복지	○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논의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정책선호도와 시사점
	외교통일	○ 트럼프 2기의 등장과 동남아 : 탈관여를 넘어 신뢰 추락으로 가는가? ○ 체계화되어 가는 중국의 대외정책 ○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및 대외정책 전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반도체 기술발전과 미래컴퓨팅 기술의 진화. 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아세안 반도체 산업의 도약 :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을 중심으로 ○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정무	○ 아시아를 넘어 세계 금융 허브를 꿈꾸는 싱가포르의 끝없는 혁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행정안전	○ 해외 지자체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와 도입 과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ICT 정책 전망 ○ 중국(심천) 콘텐츠 산업동향. 2024년 14호, 중국인의 생활 속에 파고든 버추얼 휴먼 ○ 유엔에서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현황 및 시사점 ○ 미국의 AI 투명성 관련 법제 동향 및 시사점 ○ 한국 디지털산업 규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기술규제의 정의 및 혁신과의 관계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2월 첫째주	환경노동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그린바이오 산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기획재정	○(2025년) 경제·산업 전망
	국방	○보이지 않는 전쟁 : 북한과 중·러의 인지전 대응 ○북한 해군 현대화에 대한 견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국제법상 지위와 고려사항
	문화체육	○K-가정집을 여행하는 공유숙박업의 변화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	○현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인구감소도시 생활권계획의 컴팩트-네트워크 전략 적용방안
	법제사법	○미국의 법체계와 행정부 운영방식 ○인증제도의 규제현황과 법적 쟁점
	법제사법, 환경노동	○식량 안보 및 환경위기 대응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전공학법제 논의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의 주요 내용 및 검토
	법제사법, 보건복지	○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자발적 기부를 촉진하는 법제 연구
	법제사법, 행정안전	○마을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입법 쟁점
	법제사법,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쟁점
	법제사업, 정무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입법동향과 규제설정 방향 :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R)을 소재로
	법제사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기술적 표준과 기술법 : 독일법상 기술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2월 둘째주	문화체육관광	○중국 MZ세대 관광객 유치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이후 오버투어리즘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 ○프리즘(PRISM) VS 모노(MONO) : Z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OTT 이용 동상이몽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글로벌 미래전략 조사·분석 ○SW기업의 ESG 경영 현황과 경영전략 수립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한 산업 혁신 사례연구 ○전문기관-전담기관 협력 기반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단계 제언
	보건복지	○동남아시아 합성마약 시장의 동향 변화와 한국에의 영향 ○경남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정보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 : 주요 내용, 쟁점 및 시사점 ○우주 사이버 위협의 난제와 한국의 대응 방안
	외교통일	○영국의 외국 영향력 대응 현황과 시사점 ○최근 중국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제4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평가 및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과제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한-아세안 관계 35년의 회고와 전망 ○중국의 판다외교 : 소프트파워 자원의 국가중심성과 그 한계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과 미국의 對중동 정책 ○가자지구 및 서안지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사우스 주요 이슈와 협력 방안
	교육	○위기의 교사들(Teachers at risk) : 한국 초등교사의 교직이탈 의향 분석 ○OECD PISA 2022를 통해 본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자원 활용 수준 분석 ○지역 주도 시대의 고등교육 거버넌스 : 해외 사례에서 길을 묻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트럼프 2.0시대의 경기도 대응 전략 ○트럼프 2기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대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 및 시사점 ○사용후 배터리 산업 현황과 시사점
	환경노동, 행정안전	○기후위기 시대, 경기도 기후보건 정책과 전략 ○농생명분야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비자 전략 및 운영 방안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2월 둘째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행정안전	○제주 민간 주도 우주산업 발전 정책 연구
	국방	○Z세대를 위한 안보 중심 통일교육의 전략적 재구성 ○러시아 핵독트린 개정의 함의와 파급영향 ○미국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및 감시 대응법」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육군의 부대 구조 ○트럼프 2기의 한미 확장억제 전망
	행정안전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현황과 향후 과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 조성방안
	법제사법, 정보	○한국형 생물안보·안전의 법제화 필요성
	여성가족	○인천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피해지원 강화 방안
	정무	○한국인 옆 외국인 : 외국인 손님의 부상과 대응
	법제사법, 행정안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규정 입법평가
	환경노동	○주4일제 담론지형과 주요 쟁점 :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생산성
	국토교통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 행정안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 방안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기간을 3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의견24-0264, 2024. 10. 4.)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제출 기간을 3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제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제1항에서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는 서류제출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의회는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고,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인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의 준비기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서류제출의 요구는 늦어도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준비기간을 최소 3일은 보장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충실한 준비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심의·감사·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최소한의 준비기간으로 규정한 3일보다 더 짧은 기간을 서류제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서류제출의 기간을 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상당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그 서류제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 ⑧ (생 략)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기장군, 의견24-0311, 2024. 9. 10.)

□ 질의요지

가.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율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군수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군수등”이라 한다)이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 제8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군수등이 관리하거나 군수등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군수등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3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고 하고 있고,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군수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기장군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공영주차장”이란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5조의1에서는 「부산 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제1호) 것 외에도,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제3호) 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본문에서는 군수등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장군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 또는 감면할 것인지 여부, 징수 시 그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출퇴근의 목적으로 해당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공시설인 공영주차장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사용료로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간 형평성에 맞게 징수해야 한다는 점과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현행 기장군조례 제5조의1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 사유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공익성·특수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모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그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정하는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주차요금의 결정·부과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법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과 함께 감면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거나 감면율의 상한을 조례에 규정한 후 그 범위에서 구체적인 감면율을 하위법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율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군수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 략)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24-0692, 2024. 11. 19., 문화체육관광부】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서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종류의 하나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으로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개별 관광객별로 분리하여 숙박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객실(이하 "단독객실"이라 함)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일행이 아닌 다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형태의 객실(이하 "공동객실"이라 함)도 포함**되는지?

□ 회답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 **이유**

먼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호텔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관광호텔업[가목(1)], 수상관광호텔업[나목(2)], 소형호텔업[바목(1)]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일정한 수 이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호텔업[라목(1) 및 (2)] 및 의료관광호텔업[사목(1) 및 (2)]은** 욕실이나 샤워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 및 의료관광객이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객실별 또는 층별 공동취사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호스텔업[마목 1) 및 2)]에 대해서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도록 하면서,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①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과는 달리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일 것만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에서는 객실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호스텔업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객실을 반드시 단독객실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도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서는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별 관광객별로 구분하여 숙박하기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거나, 객실을 일행이 아닌 다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이

단독객실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명시적 규정 없이 호스텔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만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7일 대통령령 제21768호로 일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호텔업의 하나로 추가된 것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배낭여행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숙박가격이 저렴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문화와 정보를 교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호스텔업을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호스텔업을 신설하게 된 것인데, 만약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의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동객실에 비하여 숙박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관광객이 다른 국적의 사람과 문화와 정보를 교류할 기회가 줄어

들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숙박가격이 저렴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문화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호스텔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의 하나로 추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 (생 략)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생 략)
2. 호텔업
 가. ~ 라. (생 략)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사. (생 략)
3. ~ 5. (생 략)

2 「소음·진동관리법」 별표 8 제1호가목의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제1호 등 관련)

【서울시마포구 24-0694, 2024. 11. 19.】

□ 질의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하 "생활소음"이라 함)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으로 제1호에서 확성기에 의한 소음(이하 "확성기소음"이라 함), 제4호에서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사업장소음"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서는 주거지역 등의 경우 소음원이 확성기(옥외설치)인 경우와 사업장(기타)인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시간대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만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이 자유로운 확성기(이하 "이동식확성기"라 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이라 함)에 대해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옥외설치) 규제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되는지?

□ 회답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유**

먼저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시장등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활소음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로서, **"사업장소음"이란** 유기적이고 단일하게 조직되어 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위한 장소에서 생겨나는 소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홍보 활동을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이동식 확성기를 두고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은 장소적 밀접성과 유기성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옥외설치) 규제기준**과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 규제기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에서는 **생활소음 규제대상으로 제1호**에서는 **"확성기"라는 소음유발매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사업장"이라는 소음유발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는 **규제대상이 중첩될 경우**의 **적용관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제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 제시된 기준들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규정의 취지와 체계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①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서 사업장 소음을 “사업장의 작업소음”으로 한정하여 규정했던 것과 달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에서는 사업장소음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규정하여, 홍보 목적이든 작업으로 인한 소음이든 소음의 구체적 유발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모든 소음을 사업장소음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장소음의 범위를 확대한 점, ② 같은 규칙 별표 8 제1호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정하면서 가목 및 나목의 지역 모두 확성기소음 중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와 사업장소음(기타)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소음 규제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한 반면, 확성기소음 중 옥외설치된 경우에는 규제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점, ③ 종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1991년 2월 2일 총리령 제37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별표 15 제2호에서는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기준을 “1회 2분 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제한한 바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옥외설치) 규제기준과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 규제기준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다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옥외설치) 규제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살펴보면, 해당 기준은 확성기가 옥외에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업장”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이므로,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에서의 “사업장”을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내부만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사업장 소재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장 부지 등 사업장 영역에 해당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업장(영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인 **사업장 소음과 그 밖의 소음은 구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과 같이 영업시간 중에만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식확성기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제1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확성기소음(옥외설치) 규제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고, **「소음·진동관리법」**은 환경권의 한 내용인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제1조)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생활소음으로 규제**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 제1호에서 대상지역, **소음원 및 시간대를 세분**하여 **각각의 경우 허용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소음 발생 행위 중지 등의 조치명령(제23조)이나 과태료 부과(제60조제3항제2호의2)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벌부과도 가능하도록(제57조제4호 및 제58조제4호)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서는 **사업장소음의 규제기준을 확성기소음(옥외설치)의 규제기준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권의 보장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규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 그 해석은 어디까지나 환경권에 관한 헌법과 환경 관련 법률의 이념에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합목적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

기준인 “사업장소음”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소음·진동관리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 및 별표 8 제1호에 따른 사업장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제1호의 “옥외설치”의 의미 및 같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확성기에 의한 소음(제1호)과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제4호)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생 략)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 외 설 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생 략)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